

제정일: 2023-04-17
개정일: 2023-04-17
시행일: 2023-05-02
개정 번호: v1.0
문서 번호: GC-PL-001

부패 방지 규정



목 차

- 1. 총칙 3**
 - 1.1 목적 3
 - 1.2 적용 범위 3
 - 1.3 용어의 정의 3
- 2. 업무분장 및 책임 6**
 - 2.1 임직원 6
 - 2.1.1 팀원 6
 - 2.1.2 팀장 7
 - 2.2 Compliance 부서 7
- 3. 부패 방지 원칙 8**
 - 3.1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준수 8
 - 3.1.1 국내 법령 및 규약 9
 - 3.1.2 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기준 9
 - 3.2 뇌물 수수 12
 - 3.3 부정청탁 12
 - 3.4 공직자 등과의 부적절한 교류 13
 - 3.5 급행료 지급 13
 - 3.6 불법 리베이트 제공 13
 - 3.7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 14
 - 3.8 대가성 자선 및 기부 14
- 4. 교육 14**
- 5. 모니터링 14**
- 6. 미준수 및 위반 14**
- 7. 관련 내부 규정 15**
- 8. 개정 이력 15**

부패 방지 규정

1. 총칙

1.1 목적

본 규정은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패 방지 규정은 GC 핵심자의 모든 임직원이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패 위험을 완화하며 국내외 제반 법령, 규정 및 산업규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부패를 인지한 즉시 이를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1.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GC 핵심자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컨설턴트, 중개인, 에이전트와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 등 제 3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GC 핵심자 관련 업무에 적용됩니다.

1.3 용어의 정의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며 아래를 포함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 3 조의 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기관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2 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급행료 - 회사의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게 해당 공직자 등의 고유한 직무의 적법한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 (예 - 비자나 취업허가증, 통관 절차, 경찰의 치안 유지, 유관 기관의 공공서비스 (수도, 전화, 전기 등)의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을 포함)

부패 행위 - ‘부패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패 행위’에 해당하며 아래를 포함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전 항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리베이트 - 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불대금의 일부나 이자등을 지불인 또는 지불처에게 되돌려 지급하는 행위 또는 그 되돌려 지급되는 금품

자금세탁 -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아래를 포함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따른 범죄행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에 따른 범죄행위
-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관세법」 제 270 조,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부정청탁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는 경우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전 항목에 기재된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협력업체 - 회사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

2. 업무분장 및 책임

2.1 임직원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에 명시된 원칙을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부패를 인지 시 즉각적으로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1.1 팀원

팀에 소속된 모든 팀원은 부패 상황 및 업무 진행상 발생 가능한 부패 리스크 발견 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리스크를 소속 팀장 및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동료 임직원의 부패 행위 발견 시 즉각적으로 소속 팀장 및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하고 해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GC 녹십자는 부패에 대해 보고한 팀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2.1.2 팀장

팀장은 팀원이 부패행위 발견 및 의문 사항에 대해 논의 및 보고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팀장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본 규정을 준수하여 팀원에게 모범을 보입니다.
- 본 규정의 중요성을 팀원들에게 전파하며, 팀원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팀원이 보고한 부패행위에 대해 발설하지 않습니다.
- (단 문제 해결을 위해 부패행위 관계자와는 해당 부패 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팀원이 부패행위 보고 시, 팀장은 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Compliance 부서에 전달합니다.
- 팀장은 보고된 부패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mpliance 부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2.2 Compliance 부서

Compliance 부서는 GC 녹십자 임직원에게 명확한 부패방지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임직원이 부패 발생 보고 시, 즉각적으로 해당 부패 행위의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해당 부패 행위의 근절을 위해 유사 형태의 부패 행위 발생 현황 및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연 1 회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부패방지 인식 및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 및 고도화 필요 영역을 판단합니다. 정기 점검 결과 및 고도화 방안을 활용하여 임직원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부패 방지 원칙

3.1 부패방지를 위한 법령 및 정책 준수

GC 녹십자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국제협약, 내부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GC 녹십자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과 규약이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 및 규약에 명시된 요건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부패의 상황을 인지했을 시 즉각적으로 소속팀의 팀장 및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하며, 부패 발생 여부에 대해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Compliance 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지침을 받도록 합니다.

GC 녹십자에서 분류하는 부패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뇌물 수수
- 부정청탁
- 공직자 등과의 부적절한 교류
- 급행료 지급
- 불법 리베이트 제공
-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
- 대가성 자선 및 기부

3.1.1 국내 법령 및 규약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공정경쟁규약’을 비롯한 국내 반부패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3.1.2 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기준

주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기준으로는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등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GC 핵심자의 임직원은 현지의 반부패 관련법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과 국외 규정 간 불일치가 있거나 해당 규정의 내용이 윤리 규정 또는 다른 규정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1.2.1 미국의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에서 GC 핵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할 시, 가장 관련성이 큰 부패 방지 법령 중 하나는 미국의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입니다. 해당 규정의 조항은 FCPA의 중요한 금지, 관할권 범위, 위반에 대한 처벌, 기업 수준 책임 및 개인 책임을 포함한 FCPA의 핵심 조항의 요약본입니다.

3.1.2.1.1 적용 대상 및 법적 제재

FCPA는 미국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토에 있는 동안” 부적절한 제안, 승인, 또는 금품지급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미국인 이외의 개인 또는 외국 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외국 법인(예: 미국 회사가 아닌 당사의 자회사 또는 합작 투자회사)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도 공모자 중 1인 이상이 FCPA의 적용 대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명백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FCPA 위반의 방조 또는 공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FCPA는 뇌물 방지 조항의 1회 위반에 따라 USD \$2,000,000 이하의 벌금을 회사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이사, 주주 및 대리인을 포함한 개인은 USD \$100,000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GC 녹십자가 지불할 수 없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Compliance 부서에 즉각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2.1.2 핵심내용

뇌물 금지 조항은 업무 진행함에 있어 공식 업무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한 사업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미국 또는 관련 국가의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제공하거나 급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미국 또는 관련 국가의 공무원에게 부정하게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급행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CPA 에서 정의되는 뇌물은 현금 및 비현금을 포함한 “무엇이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물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선물, 여행, 음식, 숙박, 접대, 기부금, 투자 및 고용 기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Compliance 부서에 즉각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1.2.2 영국의 Anti-Bribery

영국의 Anti-Bribery 법은 뇌물수수에 대한 형벌 법규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반부패 법입니다. 해당 법에서 포함하는 범죄 유형은 부적절한 행정행위 요청, 지위 남용, 사후 뇌물, 뇌물 약속 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FCPA 와 동일하게 개인(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면책을 위해서는 기업이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마련하였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3.1.2.2.1 적용 대상 및 법적 제재

적용대상자는 영국 기업 및 자회사,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 등 모두에게 적용되며, 부패범죄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영국과 관계 있는 기업 또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Anti-Bribery 상 뇌물 제공이 제한 되어있는 인원은 외국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적 성질을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 공공기관 대리업무를 진행하는 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 업무 진행상 접촉하는 인원이 위와 같은 경우 외국공무원과 동일한 선상으로 해석되어 Anti-Bribery 에 적용됨을 주의해야합니다.

뇌물 공여와 수수를 모두 제재하고 있으며, 특별히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은 별도 규정으로 다루어질 만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최대 징역 10 년 또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 재산 몰수와 직책 박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1.2.2.2 핵심내용

업무 상대방에게 자신과 관련된 직무 및 활동을 부적절하게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금전 혹은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해당 이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뇌물제공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의도에 부응하는 부적절한 행위 자체를 수용하거나 동의한 경우도 뇌물 수뢰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수수 전달 방안이 간접적으로 제공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공무원 관련하여 업무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경우 해당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외국공무원 제재 내용은 Anti-Bribery 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행료의 경우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유발할 의도가 있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국가별 관습에 따라 소규모 금액 혹은 편의를 수수하더라도 법률적 위반사항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을 경우 Compliance 부서에 즉각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2 뇌물 수수

GC 녹십자 및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제공, 전달, 요청, 수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GC 녹십자의 임직원이 협력업체 등 제 3자를 통해 뇌물을 제공, 전달, 요청, 수락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 3자를 통한 뇌물 수수 현황이 포착 시, 간접적 뇌물수수가 결과적으로 GC 녹십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선물, 접대, 향응,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선물, 접대 및 향응에 대해서는 '선물, 접대 및 향응에 관한 규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정청탁

GC 녹십자 임직원과 공직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이해관계자가 GC 녹십자 또는 협력사와 부당 거래를 하도록 알선 및 청탁하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특정 거래처나 협력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상 편의제공 요청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 즉각적으로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역을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아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Compliance 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지침을 받도록 합니다.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청탁
-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유로 한 특정인에 대한 청탁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와 관련한 청탁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 특혜 제공 등의 청탁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방지 규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4 공직자 등과의 부적절한 교류

공직자 등과의 부적절한 교류는 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일반인과의 교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사업을 진행하는 각 국가의 대정부 활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공직자 등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 사업상의 혜택 수취, 사업 지속의 목적으로 금품, 뇌물 및 혜택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수주를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5 급행료 지급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그 금액이 통상적인 가액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업무 처리절차의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의 지연을 피할 목적으로 급행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임직원이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급박한 기본권 침해상태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행료 지급이 허용되나 이를 즉각적으로 Compliance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급행료 해당 여부에 대해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Compliance 부서에 문의하여 지침을 받도록 합니다.

3.6 불법 리베이트 제공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하여, 의약품의 채택, 사용 유도 또는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허용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외 본사, 지사, 그 계열사, 협력업체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와와의 교류에 대한 규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7 자금세탁 등의 불법거래

GC 녹십자의 모든 임직원은 불법적인 수익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으로 부적절한 출처 및 수익으로 발생한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 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3.8 대가성 자선 및 기부

GC 녹십자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의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합니다. 기부금은 GC 녹십자의 사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기부금 수령 대상의 우호적인 태도, 대우, 혜택,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법령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금액이 현지의 관행과 문화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4. 교육

GC 녹십자는 전 임직원 대상으로 최소 연 1 회 부패방지 관련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을 필히 수강해야 합니다.

5. 모니터링

Compliance 부서는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상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부패가 발생하거나 부패 시도의 정황이 포착된 경우, 해당 임직원 및 부패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6. 미준수 및 위반

GC 녹십자는 본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임직원의 해고 및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내부 규정

징계 규정

이해상충방지 규정

선물, 접대 및 향응에 관한 규정

보건의료전문가와와의 교류에 대한 규정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8. 개정 이력

버전	시행 일자	변경 요약
v1.0	2023-05-02	· 신규 제정

다음 검토일: 2025-04-17

신규비교

버전 [일자]	버전 [일자]

본 정책은 2 년에 한번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정책의 검토, 개정, 관리의 책임은 Compliance 부서에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cp@gccorp.com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